

의정부지방법원 2016. 8. 9 선고 2016가단1064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6. 8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중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가" 부분 20㎡,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도면 표시 ⑤, ⑥, ⑦, ⑧,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나" 부분 15㎡,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도면 표시 ⑨, ⑩, ⑪, ⑫, 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다" 부분 5㎡를 각 철거하고,
나.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다. 2006. 4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신윤주

별지